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1.2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5호, 2013.1.23, 일부개정]

### 【제 · 개정이유】

#### [일부개정]

##### ◇ 개정이유

국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도축장의 위생관리기준 및 도축업 시설기준 등을 개선하고, 도축업 영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하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162호, 2012. 11. 6. 공포, 2012. 11. 6. 및 과태료 금액을 규정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날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과태료 금액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도축업 작업장의 위생관리기준, 시설기준 및 영업자 등 준수사항 강화(안 별표 2, 별표 10 및 별표 12)

도축장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물질의 낙하 등으로 인하여 축산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도축장 작업실의 천정·벽 등을 정기적으로 청소하도록

하고, 냉장·냉동실에 온도기록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도축업자 등이 축산물을 직접 운반하는 경우 축산물운반업 영업자와 같은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위생과 관련된 기준을 강화함.

나. 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 개선(안 별표 7)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축산물과 생산국·가공업소·제품명·가공방법·원재료명·제조일자가 모두 같은 축산물이 이미 통관된 경우에는 이를 수입한 영업자에게 통보하여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 축산물판매업의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 10)

정육점 등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이용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같이 하는 경우 시설을 분리·구획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령의 시설기준에 맞추어 식육판매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한우 판매 촉진을 위하여 시설기준의 특례를 적용하는 대상을 확대함.

라. 행정처분 기준 강화 등(안 별표 11)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따른 중요관리점에 대한 한계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즉시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고, 계측기구에 대한 검정·교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처분기준을 추가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강화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16 신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162

호, 2012. 11.6. 공포, 2012. 11. 6. 및 과태료 금액을 규정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날 시행) 별표 4 제2호가목·더목에서 축산물의 표시기준 및 영업자 등 준수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위반사항별 과태료 금액을 세분화하여 규정함.

〈농림수산물부 제공〉

**[개정문]**

●농림수산물부령 제335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월 23일  
 농림수산물부장관 (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① 법 제45조제2항 제11호 단서 및 제47조제3항제1호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별표 12 제1호가목 또는 별표 13 제1호가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중 작업장의 시설 및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장 내 해충을 방제·구제하지 아니하여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되는 등 영업

- 장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축산물의 제조·가공·포장 등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를 사용한 후 세척 또는 살균을 하지 아니하는 등 이를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자
2. 별표 12 제1호나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작업장 안에서 위생복·위생모(도축장의 경우 안전모를 말한다) 및 위생화를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개인 위생상태가 불량한 종업원을 작업에 종사하도록 한 자
3. 별표 12 제1호사목 또는 별표 13 제1호바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종업원에 대하여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별표 12 제1호아목 또는 별표 13 제1호라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출입·검사 등 기록부, 도축검사증명서를 1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5. 별표 12 제2호자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도축하려는 가축을 운송차량에서 내리거나 이동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봉 또는 가축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한 자
6. 별표 12 제4호나목 또는 별표 13 제3호파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축산물을 텔레비전·인쇄물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한 자
7. 별표 12 제4호타목 또는 별표 13 제3호러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예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 등의 증거품을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8. 별표 13 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표시하여야

» 축산법령

하는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제외한다)

② 법 제45조제4항제1호 단서 및 제47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적합하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하 이 항에서 “기준”이라 한다) 중 축산물의 영양성분에 관한 표시기준에 적합하게 영양성분을 축산물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준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를 전혀 하지 아니한 자
2. 영양성분 표시 시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3. 영양성분 표시 시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4. 영양성분의 실제 측정값이 영양 표시량 대비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자
5. 영양성분의 실제 측정값이 영양 표시량 대비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초과하거나 미달한 자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과태료 부과금액)** 영 제32조 및 별표 4 제2호가목 및 더목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6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별표 2 제3호나목 중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할 시·도지사 또는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영업자는 다음 장소에 형성되거나 부착된 이물

질을 제거하기 위한 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1) 축산물과 직접 접촉하는 시설·장비
- (2) 작업실의 천정, 벽, 자동이송장치 등(이물질의 낙하 등으로 인하여 축산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2 제4호가목에 (6) 및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탕박(湯剝)시설의 수조 및 내장 세척용수조에 탕박 또는 세척의 효과가 없을 정도로 분변이 잔류하지 않도록 수시로 물을 교환하여야 한다.
- (7) 식용에 적합하지 않거나 폐기처리 대상인 것은 식육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4) 중 “생산국”을 “식육·원유·식용란은 생산국·품명·가공업소가 같은 것을, 식육·원유·식용란 외의 축산물은 생산국”으로 한다.

별표 7 제3호다목(5)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검역검사본부장은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축산물(식육·원유·식용란은 제외한다)과 생산국·가공업소·제품명·가공방법·원재료명 및 제조일자(제조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통기한을 말한다)가 모두 같은 축산물이 서류검사를 받고 이미 통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관청과 영업을 목적으로 해당 축산물을 수입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6) 검역검사본부장은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축산물(식육·원유·식용란은 제외한다)과 생산국·가공업소·제품명·가공방법·원재료명 및 제조일자(제조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통기한을 말한다)가 모두 같은 축산물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10 제1호가목(1)(라)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1)(마) 중 “110룩스”를 “220룩스”로 하며, 같은 목 (1)에 (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계류장에는 110룩스 이상의 조명장치, 가축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급수시설, 안개분무가 가능한 분무시설 및 가축의 몸통을 세척할 수 있는 샤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처) 도축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도살·처리한 식육을 직접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제6호가목에 따른 운반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10 제1호가목(2)(가)1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시설의 배치순서는 별도 4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라인을 일직선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축장의 공간구조상 일직선으로 배치하기 힘든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방식을 달리 할 수 있다.

① 최종 세척을 마무리한 지육이 위치하는 장소로 오염원이 비산(飛散)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기흐름을 조정하는 시설을 갖춘 경우

②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을 벽으로 구분한 경우

③ 최종 세척된 도체의 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

6) 작업실과 냉장·냉동실에는 아이빔을 설치하여 일괄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아이빔은 도체가 바닥이나 벽에 닿지 않도록 설치하되, 바닥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① 작업실 : 작업실의 바닥에서 도체까지 30cm 이상

의 간격을 둘 것

② 냉장·냉동실: 작업실의 바닥에서 도체까지 10cm 이상의 간격을 둘 것

별표 10 제1호가목(2)(가)9) 중 “지육세척장치가 있어야 한다”를 “지육세척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지육을 최종적으로 세척하는 장치는 물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증기세척 방식일 것을 권장한다”로 하고, 같은 목 (2)(가)10)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온도를 확인하는 장소는 최종 세척이 이루어진 지육이 위치한 곳으로 하되, 최종 세척을 증기세척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0 제1호가목(2)(가)1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가)12) 중 “내장운반구 및 세척용수조”를 “내장운반구·세척용수조 및 폐기용저장용기”로, “스테인리스철재”를 “스테인리스철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재질”로 하며, 같은 목 (2)(가)14) 중 “냉장·냉동실은”을 “지육의 온도를 급격하게 낮출 수 있도록 급냉시설의 설치를 권장하며, 냉장·냉동실은”으로, “온도계”를 “온도계와 온도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로 한다.

11) 도살실에는 소가 매달린 상태에서 충분히 방혈(放血)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하고, 피를 동물의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팀처리시설의 설치를 권장하며, 피를 식용에 제공하거나 식품·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비는 이물 등의 오염을 방지하고 공기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피를 채취할 수 있는 장비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 축산법령

별표 10 제1호가목(2)(라)1 및 6)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시설의 배치순서는 별도 4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라인을 일직선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축장의 공간 구조상 일직선으로 배치하기 힘든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방식을 달리 할 수 있다.

① 최종 세척을 마무리한 지육이 위치하는 장소로 오염원이 비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기흐름을 조정하는 시설을 갖춘 경우

②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을 벽으로 구분한 경우

③ 최종 세척된 도체의 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

6) 작업실과 냉장·냉동실에는 아이빔을 설치하여 일괄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아이빔은 도체가 바닥이나 벽에 닿지 않도록 설치하되, 바닥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① 작업실 : 작업실의 바닥에서 도체까지 30cm 이상의 간격을 둘 것

② 냉장·냉동실: 작업실의 바닥에서 도체까지 10cm 이상의 간격을 둘 것

별표 10 제1호가목(2)(라)9) 중 “지육세척장치가 있어야 한다”를 “지육세척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지육을 최종적으로 세척하는 장치는 물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증기세척 방식일 것을 권장한다”로 하고, 같은 목 (2)(라)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작업실은 실내온도가 15℃ 이하(고온의 물 또는 화염을 사용하는 탕박수조·잔모제거기 등 열 발생 설비가 위치한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유지될 수 있도록 냉방시설의 설비를 권장하며, 이 경우 온도를 확인하는 장소는 최종 세척이 이루어진 지육이

위치한 곳으로 하되, 최종 세척을 증기세척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0 제1호가목(2)(라)11) 중 “하며”를 “하고”로, “권장한다”를 “권장하며, 피를 식용에 제공하거나 식품·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목 (2)(라)11)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설비는 이물 등의 오염을 방지하고 공기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피를 채취할 수 있는 장비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별표 10 제1호가목(2)(라)에 11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돼지의 털을 뽑는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작업실에 탈모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온샤워 또는 증기 방식을 권장한다.

별표 10 제1호가목(2)(라)12) 중 “내장운반구 및 세척용수조”를 “내장운반구·세척용수조 및 폐기용 저장용기”로, “스테인리스 철재”를 “스테인리스철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재질”로 하고, 같은 목 (2)(라)14) 중 “냉장·냉동실은”을 “지육의 온도를 급격하게 낮출 수 있도록 급냉시설의 설치를 권장하며, 냉장·냉동실은”으로, “온도계”를 “온도계와 온도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로 한다.

별표 10 제1호나목(1)(마) 중 “110룩스”를 “220룩스”로 하고, 같은 목 (1)에 (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도축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도살·처리한 식육

을 직접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제6호가목에 따른 운반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10 제1호나목(2)(가)5)중 “하며”를 “하고, 검사대가 위치한 곳은 도축기계의 가동속도를 시간당 2천500수 이내로 유지할 것을 권장하며”로 하고, 같은 목 (2)(가)9) 중 “온도계”를 “온도계와 온도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로 한다.

별표 10 제7호가목(1)(가)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축산물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10 제7호나목(1)(마) 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동업자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을 “동업자조합,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가”로 하고, 같은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식육의 위생 및 유통질서 등을 고려하여 이동판매 장소별로 판매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별표 11 2. 개별기준 가. 도축업·집유업 제1호가목 3) 위반행위란 중 “그 밖에”를 “위 1) 및 2) 외의”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별표 11 2. 개별기준 가. 도축업·집유업 제2호나목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거짓으로 점검표를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작업 전 및 작업 중 위생점검을 통틀어 10일 이상 실시·기록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작업 전 및 작업 중 위생점검을 통틀어 10일 미만 실시·기록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4) 그 밖에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별표 11 제2호가목제2호라목1)부터 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5)부터 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른 중요관리점(CCP)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거짓으로 그 기록을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10일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10일 미만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4)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거나 중요관리점에 대한 한계기준의 위반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 축산법령

5) 중요관리점에 대한 같은 한계기준을 2회 이상 연속으로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6) 계측기구에 대한 검정·교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7) 1년 이상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8) 대장균 및 살모넬라균의 검사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오염의 방지 또는 감축을 위한 적절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9) 그 밖에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별표 12 제1호라목 중 “경우”를 “경우와 검사관이 개선을 지시한 경우”로, “명령에 따른”을 “명령 및 지시에 따른”으로, “처분청에”를 “처분청 또는 검사관에게”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제46조”를 “법 제 30조 및 이 규칙 제46조”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영업자 자신이 도살·처리·가공 또는 포장한 축산물을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표 13 제2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12 제2호사목 중 “지육은”을 “지육은 10℃ 이하로 냉각시켜야 하고(소의 지육 중 가열을 하지 않고 바로 섭취할 용도로 지육의 일부를 반출하려는 경우와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포장육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돼지의 지육을 자신의 영업장 냉장시설에 보관할 목적으로 반출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전기봉(전기를

이용하여 가축에 충격을 가하는 장치)을”을 “전기봉(전기를 이용하여 가축에 충격을 가하는 장치를 말한다) 또는 가축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를”로 한다.

별표 12 제4호바목 중 “품목명·중량·보관방법 및 유통기간을”을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유통기한, 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소재지 및 냉동 전환을 실시하는 날짜를”로 한다.

별표 13 제3호가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를 “식육의 종류”로 하고, 같은 호 카목 중 “품목명·중량·보관방법 및 유통기한을”을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유통기한, 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소재지, 냉동 전환을 실시하는 날짜 및 축산물수입신고필증번호를”로 하며, 같은 호에 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버. 영업자가 자신이 유통·판매하는 축산물을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제2호(식용란의 경우 제2호라목은 제외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출하농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농장에서 출하된 가축 여부: [ ]여, [ ]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제7호가목(1)(가)3) 및 같은 호 나목(1)(마) 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부분 후

출하농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농장명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농장 여부		적용[ ], 미적용[ ]

단은 제외한다)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과 별표 16 제 2호마목의 개정규정 중 가축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에 대한 부분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그 기준 이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별표 16]

**법 제6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른 위반행위 중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제62조 관련)**

(단위: 만원)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축산물의 영양성분에 관한 표시 기준을 적합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제1항제1호, 영 별표 4 제2호가목 및 이 규칙 제61조제2항	
가. 영양성분 표시를 전부 하지 않은 경우		200
나. 영양성분 표시 시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
다. 영양성분 표시 시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
라. 영양성분의 실제 측정값이 영양 표시량 대비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50
마. 영양성분의 실제 측정값이 영양 표시량 대비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20



» 축산법령

<p>2. 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라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 규칙 제6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p>		
<p>가. 별표 12 제1호가목 또는 별표 13 제1호가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중 작업장의 시설 및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장 내 해충을 방제·구제하지 아니하여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되는 등 영업장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축산물의 제조·가공·포장 등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를 사용한 후 세척 또는 살균을 하지 아니하는 등 이를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p>	<p>법 제47조제3항제1호, 영 별표 4 제2호더목 및 이 규칙 제61조제1항</p>	<p>30</p>
<p>나. 별표 12 제1호나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작업장 안에서 위생복·위생모(도축장의 경우 안전모를 말한다) 및 위생화를 착용하지 않거나 개인 위생상태가 불량한 종업원을 작업에 종사하도록 한 경우</p>		<p>20</p>
<p>다. 별표 12 제1호사목 또는 별표 13 제1호바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종업원에 대하여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p>		<p>10</p>
<p>라. 별표 12 제1호아목 또는 별표 13 제1호라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출입·검사 등 기록부 또는 도축검사증명서를 1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p>		<p>10</p>
<p>마. 별표 12 제2호자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도축하려는 가축을 운송차량에서 내리거나 이동하게 하기 위해 전기봉 또는 가축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p>		<p>30</p>
<p>바. 별표 12 제4호나목 또는 별표 13 제3호파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축산물을 텔레비전·인쇄물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p>		<p>30</p>
<p>사. 별표 12 제4호타목 또는 별표 13 제3호 러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 등의 증거품을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p>		<p>100</p>
<p>아. 별표 13 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p>		<p>100</p>